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명 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416 |
|----------|-----|

발의연월일: 2021년 11월 23일

발 의 자: 이명순, 이주웅, 박찬원,  
지광천, 장문혁, 심현정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위임사항 및 인용조문을 일괄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나.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 다.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
- 라.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 마.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 바.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 사. 「평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아.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자.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입법예고 : 2021. 11. 15. ~ 2021. 11. 21.(6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1조”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41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4항”을 각각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39조제3항 및 제41조”를 “영 제43조제3항 및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41조제1항”을 “영 제4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1조제2항”을 “영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제1항”을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0조제2항”을 “영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영 제42조제1항제5호”를 “영 제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2조제2항”을 “영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

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영 제43조제5항”을 각각 “영 제47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50조”를 “영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를 “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34조제1항”을 “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을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4항”을 “영 제4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부터 제88조”를 “법 제98조부터 제10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46조”를 “영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47조”를 “영 제51조”로 한다.

제18조 후단 중 “법 제43조”를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1]

##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제12조제3항 관련)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평창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서식]

## 증인출석 요구서

귀하

평창군의회가 20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해야 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창군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증언요지 :
4.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평 창 군 의 회 의 장

직인

## 참고인 출석 요구서

귀하

평창군의회가 20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귀하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해야 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창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 2. 출석장소 :
- 3. 진술요지 :
- 4.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평 창 군 의 회 의 장

직인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기명날인)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2조(「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겸직의 신고·변경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으로 한다.

[별표 2]

**평창군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평창군과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취득·알선해서는 안 된다.
4.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7.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해서는 안 된다.
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9.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0.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 연번   | 1              | 검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                  |             |   |   |
| 검직(변경)신고서  |                |  |                  |             |   |   |
| 소속정당   |                |  | 선<br>거<br>구<br>분 | 지<br>역<br>구 |   |   |
| 성<br>명   | 한<br>글         |  |                  | 비례대표        |   |   |
|  | 한<br>자         |  | 생년월일             |             |   |   |
| 검<br>직<br>내<br>용   | 기관·단체명         |  |                  |             |   |   |
|  | 직 위            |  | 기간               | ~           |   |   |
|  | 수행업무내역         |  |                  |             |   |   |
|  | 분 야            | 농수산 <input type="checkbox"/> , 상공업 <input type="checkbox"/> ,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br>교육 <input type="checkbox"/> ,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                  |             |   |   |
|  | 영리성 여부         | 영리 <input type="checkbox"/> ,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                  |             |   |   |
|  | 보수수령 여부        | 보수수령 <input type="checkbox"/> , 보수 미수령 <input type="checkbox"/>  |                  |             |   |   |
|  | 보수 수령액<br>(연간) | 근로소득   |                  |             |   | 원 |
|  |                | 근로소득 이외 소득   |                  |             |   | 원 |
| 계  |                |  |                  |             | 원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 <p>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br/>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자                      (서명)</p> <p>평창군의회의회장 귀하</p> |                |  |                  |             |   |   |



#### **제4조(「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 **제5조(「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로 한다.

제2조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53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45일”을 “45일 이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5일”을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0일”을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해”를 “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5월·6월”을 “5월·6월”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영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회의원”을 “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기가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54조제2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41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군수가 제출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 발의 또는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 정례회”를 “정례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5조제2항 본문에 따른 15일”을 “15일”로 한다.

**제6조(「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평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라 한다)**」 제42조”를 “**이라 한다)**」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법 제126조 내지 129조**”로 한다.

### **제8조(「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

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영 제15조의3제2항**”을 “**영 제39조**”로 한다.

### **제9조(「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 “**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평창군규칙**”을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평창군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평창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감사”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에 대하여 해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말한다.</p> <p>2. “조사”란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p> |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br/>-----<br/>-----<br/>-----.</p> <p>제2조(정의) -----<br/>-----.</p> <p>1. -----<br/>-----<br/>-----<br/>----- 제49조-----<br/>-----.</p> <p>2. -----<br/>-----<br/>-----<br/>-----<br/>----- 법 제49조-----</p> |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사를 말한다.

- 3. “증인”이란 의회가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의결을 거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 4. “참고인”이란 대상사무에 대한 책임은 없더라도 의회에서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의견진술의 청취가 필요할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제5조(조사) ① 의회는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조사가 발의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② (생략)

제6조(계획서)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39

-----.

- 3. -----  
-----  
-----  
-----  
----- 법 제49조제4항 -----  
-----.

가. ~ 다. (현행과 같음)

- 4. -----  
-----  
-----  
-----  
----- 법 제49조제4항 -----  
-----.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5조(조사) ① ----- 법 제49조제2항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계획서) ① -----  
-----  
----- 영 제43조제3항 및 제4

조제3항 및 제41조의 감사 및 조사계획서(이하 “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실시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이송한 후 이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다.

② 계획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영 제4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 9. (생략)

③ 위원회는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계획서를 반려 받은 때에는 이를 추가, 삭제, 보완 등 수정하여 다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생략)

제7조(활동기간)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결과가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2. (생략)

5조-----

② -----.

1. 영 제45조제1항 -----

2. ~ 9. (현행과 같음)

③ ----- 영 제45조제2항-----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활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50조제1항-----

1.·2. (현행과 같음)

③ 본회의는 위원회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고를 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다음 그 의결로 해당 활동기간을 연장(조사위원회에 한정한다)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조례에서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영 제42조제1항제5호·제6호 및 군 해당 조례에 따른 기관·법인 및 단체

② 의회는 다른 시·군에도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경우 그 절차·방법, 대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시·군의 지방의회와 서로 협의해야 한다.

제9조(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이 조례에서 “대상사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 ----- 영 제54조제2항-----  
-----  
-----  
-----.

제8조(대상기관)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46조제1항제5호-----  
-----  
-----

② -----  
-----  
-----  
----- 영 제54조제2항-----  
-----  
-----.

제9조(대상사무) ① -----  
----- 법 제13조-----  
-----  
-----  
-----.

② (생략)

제11조(방법)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요구서는 의장의 명의로 해당 증인·참고인에게 발송하되,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제12조(증인선서) ①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증인선서(이하 “증인선서”라 한다)는 대상기관별로 일괄하여 또는 증인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선서는 해당 증인의 대상사무 실시 전에 각각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증인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증인선서 전에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취지 및 제재사항을 별표 1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3조(증인보호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이나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방법) ① 법 제49조제4항-----  
-----  
-----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증인선서) ① 영 제47조제5항-----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영 제47조제5항-----  
-----.

제13조(증인보호 등) ① 법 제49조제4항-----

증언·진술을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결과보고 및 결과처리)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고 영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보고하는 해당 보고서에는 그 경과·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법 제41조의2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생략)
2. 결산심사와 관련된 법 제1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상기관의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에 관한 필요사항

③·④ (생략)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결과보고 및 결과처리) ① -----  
영 제54조-----  
-----  
-----  
-----.

② ----- 법 제50조

-----  
-----  
-----  
-----  
-----.

1. (현행과 같음)
2. ----- 법 제150조 제1항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과태료) ①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② (생략)

③ 의장은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생략)

2. 해당 증인이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실

④·⑤ (생략)

제16조(징계)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원을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은 때

제15조(과태료) 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7조제4항-----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영 제47조제4항-----  
-----  
-----.

1. (현행과 같음)

2. ----- 법 제49조제4항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징계) -----  
-----  
-----  
----- 법 제98조부터 제100조-----  
-----  
-----.

1. 영 제50조-----  
-----  
-----

|  |  |
|--|--|
| <p>2.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p> <p>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법 제43조에 따른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 <p>2. 영 제51조-----<br/>-----</p> <p>제18조(시행규칙) -----<br/>-----<br/>----- 법<br/>제52조-----<br/>-----.</p> |
|--|--|

□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평창군의회가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br/>-----<br/>-----.</p>  |
| <p>제2조(설치)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p> | <p>제2조(설치) ① -----<br/>----- 「지방자치법」<br/>제64조제2항-----<br/>-----<br/>-----<br/>-----.</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p> |

|   |  |
|---|--|
| <p>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p> | <p>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p> |
|---|--|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 <u>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u>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br/> <u>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u>-----<br/> -----<br/> -----<br/> -----<br/> -----<br/> -----<br/> -----.</p> |
| <p>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p>   | <p>제7조(겸직신고) ① -----<br/> ---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br/> -----<br/> -----</p>   |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평창군의  
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  
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④ (생략)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  
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  
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  
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기준은 별표 3을 준용한다.

1. (생략)

-----  
-----  
-----  
-.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  
조제3항-----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지방자치법」 제44조제2  
항-----  
-----  
--.

⑥ 의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의 겸직의 신고·변경사항에 대  
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등) -----  
-----  
-----  
-----  
-----  
-.

1. (현행과 같음)

|   |  |
|---|--|
| 2. 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 2. -----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br>----- |
| 3. ~ 6. (생략)                                    | 3. ~ 6. (현행과 같음)                       |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br>-----<br>-----<br>-----. |

□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br>-----<br>-----<br>-----.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례회 등”이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  | 제2조(정의) -----<br>-----<br>-----                                    |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해마다  
집회하는 정례회(이하 “정례회”라 한다)와 임시회(이하 “임시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법 제47  
조제2항에 따라 100일 이내로  
한다.

② (생략)

제5조(회기) ① 의회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례회 등의 회기  
(이하 “회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1. 정례회: 다음 각 목의 두 차례  
합계 45일

가. 제1차 정례회: 15일

나. 제2차 정례회: 30일

2. (생략)

② (생략)

제6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  
일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해마다  
각각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다만,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 제53조 및 제54조 -----

-----  
-----  
-----.

제4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  
----- 법 제53조  
제2항-----.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기) ① ---- 법 제56조제  
2항-----  
-----.

1. -----  
-- 45일 이내

가. ----- 15일 이내

나. ----- 30일 이내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집회일) ① -----  
- 해-----  
-----  
-----.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 2. (생략)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5월·6월이나 11월·12월 중에서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각각 변경하여 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 임시회 또는 해당 정례회의 집회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집회시기 변경) ① 의장은 영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10월 중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변경·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도 해당 연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 5월·6월-----  
-----  
-----  
-----  
-----  
-----.

제7조(집회시기 변경) ① -----  
의회의원-----

-----  
-----  
-----  
-----  
-----  
-----.

----- . <후단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시기가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

제8조(처리안건 등)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영 제5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안건과 그 밖에 발의·제출된 의안 등을 각각 처리한다.

<신 설>

<신 설>

②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시기는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다. ·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발의·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한다.

<신 설>

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

제8조(처리안건 등) ① -----  
----- 다음 -----  
-----  
-----  
--.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법 제49조-----  
-----  
-----  
----- .-----  
-----  
----- .

제8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10조(집회공고 등) . 정례회의  
 집회공고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  
 으며, 본회의에서의 회기결정  
 은 생략한다. 이 경우 의장은  
 처리안건 등 의사일정을 홈페이지  
 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  
 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부터 법 제45조제2항 본문에 따  
른 15일 이내의 기간 중에서 기  
 본일정 또는 해당 요구일과 달  
 리 정할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한 날을 집회일로 정하여 집회  
 공고를 해야 한다.

발의하거나 군수가 제출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의안을 제  
출할 경우 의결을 거쳐 위 원  
장 명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  
발의 또는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10조(집회공고 등) ① 정례회--  
 -----  
 -----  
 ----- . ----  
 -----  
 ----- .

② -----  
 -----  
 ----- 15일 --  
 -----  
 -----  
 -----  
 ----- .

□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   |
|---|---|---|---|---|
| 현 | 행 | 개 | 정 | 안 |
|---|---|---|---|---|

|   |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u>에 따라 <u>평창군의회</u>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 정책 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u>-----<br/>-----<br/>-----<br/>-----<br/>-----.</p> |
|---|---|

□ 평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42조</u>의 규정에 의하여 <u>평창군</u></p> <p>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u>법 제104조 내지 107조</u>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p> <p>4. (생략)</p> | <p>제1조(목적) -----<br/>-----<u>이라 한다</u>)」 <u>제51조</u>-----<br/>-----</p> <p>제2조(범위) -----<br/>-----<br/>-----.</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법 제126조 내지 129조</u>-----<br/>-----</p> <p>4. (현행과 같음)</p> |

□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p> | <p>제1조(목적) -----</p> |

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3. ~ 5. (생략)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생략)

②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평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

--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  
-----  
-----.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영 제39조-----  
-----  
-----

|  |   |
|--|---|
| <p>른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생략)</p> | <p>-----<br/>-----<br/>-----<br/>-----.</p> <p>③ (현행과 같음)</p> |
|--|---|

□ 평창군의회의원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lt;신설&gt;</u></p> | <p>제1조(목적) -----<br/>--제102조 및 제103조-----<br/>-----<br/>-----<br/>-----<br/>-----<br/>-----.</p> <p>제5조(정책지원관) ①사무과에 <u>정책지원관을 둔다.</u><br/>② <u>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는다.</u></p> |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을 따로 평창군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원의 정원) -----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7조(시행규칙) -----  
-----  
----- 평창군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 없음.

## 4. 작성자

|     |                 |
|-----|-----------------|
| 작성자 | 평창군의회 이명순 의원    |
| 연락처 | (033) 330 -2503 |